

자격관리운영규정

제1조 (목적)

제1항

본 규정은 WEB3 구조 설계자 자격(이하 “본 자격”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 검정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자격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자격의 운영 원칙 및 적용 범위
2. 자격 등급 체계 및 등급별 관리 기준
3. 응시자격 및 검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합격 및 자격 부여 기준
5. 부정행위 처리 및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
6. 자격의 사후 관리 및 운영 절차

제3항

본 자격은 특정 직무의 채용, 취업 또는 수익 창출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WEB3 및 블록체인 기반 구조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을 단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민간자격으로 운영한다.

제4항

자격관리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며, 응시자에게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제1항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

“본 자격”이라 함은 WEB3 및 블록체인 기반 구조에 대한 이해, 활용, 판단 및 책임 수행 능력을 단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민간자격을 말한다.

제3항

“자격관리기관”이라 함은 본 자격의 기획, 검정, 발급,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제4항

“등급”이라 함은 본 자격의 검정 수준과 역할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된 자격 단계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Basic

- Associate
- Professional

제5항

“응시자”라 함은 본 자격의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6항

“필기검정”이라 함은 WEB3 및 블록체인 관련 개념, 구조, 원리 및 적용 판단에 대한 이해도를 문항 형태로 평가하는 검정 방식을 말한다.

제7항

“실기검정”이라 함은 실제 자산의 이동이나 시스템 실행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WEB3 환경 또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절차 이해, 역할 인식 및 구조적 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검정 방식을 말한다.

제8항

“검정과목”이라 함은 자격 등급별로 검정 대상이 되는 지식, 이해, 활용 또는 판단 영역을 말한다.

제9항

“부정행위”라 함은 검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타인의 도움을 받아 검정을 수행하는 행위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검정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 기타 자격관리기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제10항

“자격 취소”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본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이미 부여된 자격의 효력을 소급 또는 장래를 향하여 상실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응시자격)

제1항

본 자격은 연령, 학력, 전공, 경력 등에 대한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제2항

자격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Basic: 별도의 선이수 요건 없이 응시할 수 있다.
- Associate: WEB3 Basic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이해를 갖춘 자로서 자격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
- Professional: WEB3 Associate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관리기관이 정하는 추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제3항

자격관리기관은 등급별 검정 목적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응시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항

응시자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자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자격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제1항

본 자격의 검정은 자격 등급별 특성에 따라 필기검정 또는 실기검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항

자격 등급별 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Basic: 필기검정
2. Associate: 필기 및 실기검정
3. Professional: 필기검정 또는 종합 평가

제3항

필기검정은 WEB3 및 블록체인 관련 개념, 구조, 원리 및 적용 판단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4항

자격검정 당일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종)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온라인 검정의 경우 사전 등록 정보와 응시자 정보의 일치 여부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제5항

실기검정은 실제 자산의 이동이나 시스템 실행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WEB3 환경 또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절차 이해, 역할 인식 및 구조적 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6항

검정과목, 평가 항목, 출제 범위 및 세부 검정 기준은 자격의 목적과 등급별 수준을 고려하여 자격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7항

합격기준은 각 검정별 총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자격관리기관이 정한다.

제8항

자격관리기관은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부정행위 및 자격 취소)

제1항

자격관리기관은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본다.

1. 타인의 도움을 받아 검정을 수행하거나, 타인을 대신하여 검정에 응시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검정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 및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4. 기타 자격관리기관이 검정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 3항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검정은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제 4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격관리기관은 해당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5항

자격 취소와 관련된 세부 절차, 기준 및 처리 방법은 자격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 6항

자격관리기관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자격 검정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 6조 (자격의 관리 및 운영)

제 1항

본 자격의 관리 및 운영은 자격관리기관이 담당하며, 자격 검정의 기획·실시·평가·발급 및 사후 관리를 총괄한다.

제 2항

자격 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및 관리 인력은 자격 발급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확보·운영한다.

제 3항

자격관리기관은 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정 운영 절차, 평가 기준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 4항

자격관리기관은 자격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정 방식, 평가 기준, 운영 절차 등을 개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 5항

자격관리기관은 자격 취득자의 정보를 자격 관리 목적 범위 내에서 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 6항

본 자격의 유지, 관리,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항 (시행일)

본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실시되었거나 진행 중인 자격 운영, 검정 및 관련 절차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격관리기관이 정하는 운영 기준을 따른다.